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30345]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 2023.03.03]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2024.12.05.]

dt8820@naver.com

[567해장국집]

정 보 공 개 서

「 디티푸드 」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디티푸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 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32, 1층(하동)]

[전화: 02-569-8820] [팩스: 02-569-8821]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2-569-8820]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	자의 부담
٧.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 Ⅲ .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 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 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567해장국집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32, 1층(하동)					-)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	호	대표팩스번호		
디티푸드 	개인사업자	2014.08.14	이종성	02-569-8820		02-569-8821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120-12-2947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개인사업자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인수ㆍ합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 • 합병 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드리즐	드리즐	2023.03.14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196, 1층 1-090호(민락동, 민락2지구 제일풍경채 센텀-애비뉴모나코)	이채은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플로우	고기바보 헬로베트남쌀 국수 훗스테이크	2024.10.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 로1380번길 6, 3층 302호(유방 동)	이민용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567해장국집]라고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567해장국집	
상 호	567해장국집 ○○○ 점	
상표(서비스표)	한글 : 567해장국집	
상표 및 서비스표	· · · · · · · · · · · · · ·	출원준비 중
0 m × 1-1 m	57 0	2 E E −1 O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68285	16,352	51,932	699,557	34,825	49,494
2022년	66,148	5,632	60,515	840,422	87,826	104,583
2023년	21,337	11,011	10,325	695,231	22,040	21,810

2)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 ▶ 당사의 바로 전 3 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다만, 당사는 현재 가맹사업으로 "고기바보", "헬로베트남 쌀국수", "훗스테이크", "567해장국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기 1)의 매출액중 『567해장국집』만을 위한 가맹사업 매출액은 상기 금액보다 매우 적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567해장국집은 2023년 인수하여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이 없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여부	И В	성 명	현 직위		사업경력	
완년 역구 	0 0	현역제	기 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	이종성	대표	2014.08.14. ~ 현재	대표	회사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u>2023년 12월 31일</u>	상근	비상근	E
	1	-	5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디티푸드/육앤샤	가맹사업경영	2014.08.14. ~ 2021.06.02	육앤샤(등록번호:20140552) 라는 가맹사업경영
기메ㅂㅂ	디티푸드/헬로베트남 쌀국수	가맹사업경영	2016.06.19 ~ 2024.09.30	헬로베트남쌀국수(등록번호 20160553)라는 가맹사업경영
│ 가맹본부 │ │	디티푸드/고기바보	가맹사업경영	2017.05.19 ~ 2024.09.30	고기바보(등록번호: 20171015)이라는 가맹사업 경영
	디티푸드/훗스테이크	가맹사업경영	2019.03.12. ~ 2024.09.30	훗스테이크(등록번 호:20190251)라는 가맹사업 경영

- ▶ 당사는 [육앤샤] 가맹사업을 2021년 6월에 정보공개서를 자진취소 하였습니다.
- ▶ 당사의 헬로베트남쌀국수, 고기바보, 훗스테이크는 2024.10.01.자로 플로우에 양도하였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자 및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가맹점 운영권 내에서 사용	-	-	-	존속기간: (허용기간): 가맹사업 종료 시까지

▶ 당사의 지적재산권의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567해장국집]을 시작한 날 : 2023년 03월 14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24년 5월 14일)

2. [567해장국집]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드리즐	드리즐	이채은	가맹사업 예정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196, 1층 1-090호 (민락동, 민락2지구 제일풍경채 센텀-애비뉴 모나코)
디티푸드	드리즐	이종성	2023.03.14. ~ 2024.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32, 1 층(하동)
디티푸드	567해장국집	이종성	2024.06. ~ 현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32, 1 층(하동)

3. [567해장국집] 업종

영업표지	업종				
5.67 THE T TI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567해장국집	한식	해장국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567해장국집]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TICH	2021년도 말			2022년도 말			2023년도 말		
지역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1	-	1	1	-	1	0	0	0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_	-	_	_	-	-	-	_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경기	1	-	1	1	-	1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 당사의 567해장국집은 가맹점이 없습니다.

5. 최근 3년간 [567해장국집]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년	-	-	-	-	-	-
2022년	-	-	-	-	-	-
2023년	-	-	-	-	-	-

▶ 당사의 567해장국집은 가맹점이 없습니다.

6. [567해장국집]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78	사하이르	여어ㅠ티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등록번호		가맹점/직영점의 수		
구분	상호/이름	정립표시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디티푸드	헬로베트남 쌀국수	20160553	기타 외국 식	13/0	9/0	9/0
가맹본부		고기바보	20171015	한식	1/0	0/0	1/0
		훗스테이크	20190251	서양식	15/0	17/0	20/0

- ▶ 당사의 [육앤샤]는 가맹사업을 2021년 6월에 정보공개서를 자진취소 하였습니다.
- ▶ 당사의 헬로베트남쌀국수, 고기바보, 훗스테이크는 2024.10.01.자로 플로우에 양도하였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

정기준

			2023년 기	가맹점사업지	l의 연간 평	균 매출액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연간 평균	군 매출액		평균 (상한)		평균 ¦(하한)	비고
	기장심구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	-	-	-	-	-	-	-
서울	-	1	1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1	1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 당사의 567해장국집은 가맹점이 없습니다.

8. [567해장국집]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567해장국집]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단위:일)
2023년	-	-

[▶] 당사의 567해장국집은 가맹점이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없음 : 작년 말 가맹지역본부 및 가맹지역사무소 현황은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	비고		
一下世	구긴	기간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0175
합계		2023.01~2023.12	0	0	-	
광고 및 판촉	소계		0	0	-	

▶ 당사의 567해장국집은 광고 및 판촉비에 사용한 금액이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삼성역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1588-9999 02-528-3701

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국민은행	계좌가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국민은행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				
있는 시	나업자	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받아 보관				
국민은행	계좌가	국민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 실행				
없는 시	나업자	국민단당 계획계를 후 위의 물이 물병				
계좌	본인이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개설시	개설시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필요서	대리인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류	개설시	③ 위임장 ④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인터넷을 통해 예치 시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 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디티푸드**]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해당없음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해당없음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해당없음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 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567해장국집]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비용, 기타 정한 품목 외 귀하와 협의한 별도 구입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8,800				(예외조건)
가맹비	5,500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은행 예치	반환 안됨	가맹점 개점을 위한 제반 비용으로서 개점 이후 반환되지 아니함	개점 전 해약을 요청할 경우 계 약서 위약금 규 정에 따라 상계 처리 후 반환
교육비	3,300		교육 후 반환 안됨	개점 전 교육비로 소요	개점 전 교육 미 이수 시 반환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 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현금)보증금	없음	-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 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 계	8,800		
가맹비	5,500		
교육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4]쪽 이하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0평 기준)(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그ㅂ			면적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TE	시표네정	20평(39.6m²)	3.3m ² 당 금액	시합 기원	D 전 또 인	미포
						*현장 실측에 따라
총계		75,350	3,767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별도	공사착수 전	설계 및 디자인,
인테리어	협력업체	35,200	1,760			목공사, 전기, 조명,
				계약	계약취소	도장, 설비, 바닥타일

						및 마감 등
71.71	원 과 시 제	F F00		ᄪᆮᆁᅅ		메인간판, 사이드
<u>간</u> 판	협력업체	5,500		별도계약	-	간판(기본4m기준)
기기 및 설비	협력업체	27,500		물품공급 3일 전	주방기기 미 공급 시	냉장고, 냉동고, 간텍기, 육절기 등
의/탁자	협력업체	3,850		제작 3일 전	의/탁자 미공급 시	테이블, 의자
전산설비	협력업체	임대				POS, 테이블오더
초도물품 (원·부재료)	자율 및 별첨1 공급업체	3,300		물품공급 1일 전	물품 미공급 시	별첨1 참조
별도공사	외부공사, 파사드, 철거,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설비, 외장, 전기증설, 가스증설, 전화기, 컴퓨터, 테라스 등					

- ▶ 위 표의 금액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는 오픈일정 및 품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인테리어·간판·장비·설비 등 가맹점 개설과 관련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집기를 직접 구매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사는 공사 및 설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 여 감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리는 이미지 및 컨셉 관련 부분을 의미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지는 귀하의 책임하에 선정하며 당사는 담당자를 통하여 선정과정에서 일정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화: 02-569-8820)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ㆍ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당사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만 19세 이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파산,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자가 아닐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567해장국집]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8) 최초 가맹금의 납부 방법
 - ☞ 영업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해당 항목별 기한 내에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 부기준은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로열티)	가맹본부	매출액의 3.3% (강제품목 사용 시)	매월 5일	반환안됨	영업표지사용 브랜드노하우 등의 대가	강제품목 미사용 시 매출액의 5.5% 지급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50%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광고비로 소요	가맹점사업자 균등부담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50%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안됨	판촉비로 소요	가맹점사업자 균등부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분담금		해당없음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전	교육 개시 전	교육 개시 후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없음				
점포환경 개선비용	미지정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 음날부터 지급 하는 날까지	반환안됨		
POS	협력업체	싱글포스 33 듀얼포스 44 테이블오더 대당 22	포스사 지정일자	반환안됨	포스 할부비	3년 약정 시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에는 가맹본부의 운영을 위한 마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단위:천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해당없음 : 당사의 567해장국집은 가맹점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한 감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점포운영	위생상태 및 점포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2개월 1회 방문	문의: 본사 (02-569-8820)
재고관리	실제 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분기별 1회	문의: 본사

	재고와 비교		(02-569-8820)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1년 1회	문의: 본사
(회계관리)	조사 실시		(02-569-8820)

- ▶ 당사는 귀하의 점포 경영상태 및 위생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점포를 점검하고 위생, 레시피, 영업방침, 영업표지 등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에서 지정하는 자가 상기사항 점검이나 기타 재고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자신의 가맹점에 출입하고 식자재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 ▶ 귀하는 회계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당사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갱신에 의한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추가로 납입하여야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른 계약조건은 갱신 당시의 신규가맹계약서에 준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 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하거나 원할 경우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 를 탈퇴할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금에서 영업표지 사용료, 영업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 이 전체 가맹계약기간에 대한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에서 최초의 계약기간 중 잔 여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갱신된 경우에는 반환되는 가맹금은 없 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며, 귀하는 새로운 대체수단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가)의 경우에 준하여 일부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된 경우에는 반환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567해장국집]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계약서에 규정된 양수가맹비 · 교육비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0]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당사와 귀하 사이의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의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당사로부터 부여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의 비용은 계약이 당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귀하가 부담합니다. 또한 귀하는 계약의 종료 즉시 당사에 대한 채무전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하며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잔존 채무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합니다.]

[귀하는 당사의 상호 및 상표, 기타 구조물 등 당사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시스템 및 점포운영에 관한모든 매뉴얼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 등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당사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귀하가 계약 종료에 따른 위의 조치를 정해진 기간 안에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지체1일당 3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니,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계약종료 후 조치 미이행시의 위약금조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567해장국집]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 해당없음 : 당사의 567해장국집은 가맹점이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567해장국집]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직전년도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567해장국집]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년도 수취한 경제적이익은 없습니다.
- 2) 당사가 [567해장국집]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 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년도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아래> 3)가맹점사업자의 가격결정의 제한 중 < 상품명 > 참조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물품중단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간판철거와 계약해지	문의: 본사 (02-569-8820)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필요한 경우 경영방침에 따라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추가적으로 상품・용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서면이나 e메일, 문자, 카톡 기타 통신수단으로 귀하에게 통지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 혹은 당사가 지정한	제한된 거래상대방에게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물품중단 *2회 시정요구에도
경쟁업체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물품	무상지원 및 판매 금지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간판철거와 계약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에 기재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귀하에게 공문을 통해 통지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귀하는 당사가 제시한 권장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권장가격은 당사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가격이며 추후 제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권장가격 (단위: 원)	상품명	권장가격 (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선지해장국	5,000				
차돌양지해장국	6,000				
양곱창해장국	7,000				
나주공탕	6,000				
육회비빔밥	7,000				
미니수육	5,000			변동 시 서면이나	
보쌈	15,000			이메일, 문자, 카톡 기타 통신수단으로 공지	2024년 12월 기준
양무침	15,000				12월 기正
공기밥	1,000				

[귀하가 당사가 제시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당사에 문서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절인 접충 급기	가맹본부	계열회사	
해장국을 판매하는 업종	567해장국집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별지에 정한 구역이 우선)	(별지도면 첨부)

- ▶ 배달의 경우도 영업지역은 동일합니다.
- ▶ 특수상권은 귀하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의 영업지역이 특수공간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공간만 귀하의 영업지역에 해당하며 이를 벗어나는 곳은 영업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 종합쇼핑몰, 양판점, 관공서, 지하상가, 대학, 병원, 전철역, 기차역, 터미널, 경기장, 휴게소, 종합병원, 공항, 호텔, 놀이공원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 상권을 의미합니다.
- ▶ 당사가 온라인상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등은 귀하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		
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안) 작성 →	회신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히 변동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동의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입점 가능).
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		
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567해장국 집]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 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 당사는 [567해장국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 해당없음 :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년	-	-	-	-

- ▶ 해당없음 : 당사의 567해장국집은 가맹점이 없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년	-	-

▶ 해당없음 : 당사의 567해장국집은 가맹점이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567해장국집]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1년 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 까? (예→B, 아니오→A)	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	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 (예→B, 아니오→D)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 (예→B, 아니오→®)	지하였습니까?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 예→E $,$ 아니오→A $)$	데기하였습니까?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7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	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2조 1항 각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 지 아니한 경우	32조 1항 각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2조 1항 각호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32조 1항 각호
○ 당사의 가맹사업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32조 1항 각호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귀하가 개점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입지선정을	
못하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33조 1항 1호
경우	
○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	33조 1항 2호
우	22元 18 2五
○ 사전 동의 없이 당사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33조 1항 2호
경우	JJT 18 ZT
○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에 손해를 끼친 경우	33조 1항 2호
○ 상호 또는 상표를 본 계약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사전승인 없이 점포의 소재지, 상호, 사업자명의 등을 변경한 경우	33조 1항 2호
○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이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 거부	그그 4
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로열티, 물품대금, 시스템사용료, 공사견적금액, 기타 본 계약에 따라 당사 또는	33조 1항 2호

"공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완불되지 않은 경우	
○ 귀하가 제16조[점포에 대한 지도감독]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 제3항의 당사의 점검에 정당한 이	33조 1항 2호
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2표 18 5중
○ 귀하가 제17조[시설 및 기기의 유지 관리] 규정에 따라 시설의 유지보수를 게을리	227 45 25
하여 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귀하가 제18조[시스템 및 운영매뉴얼의 제공] 규정에 의한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귀하가 제19조[POS 등 설비 및 기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3조 1항 2호
○ 귀하가 제20조[광고 및 판촉]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귀하가 제21조[영업의 표준화 및 물품공급 등에 대한 사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33조 1항 2호
○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이 당사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 비밀을 누설한 경우	33조 1항 2호
○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33조 1항 2호
○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당사 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33조 1항 2호
○ 서면동의 없이 가맹점운영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위탁한 경우	33조 1항 2호
○ 고객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클레임이 제기되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 우	33조 1항 3호
○ 기타 가맹계약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가맹계약에 따른 당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3조 1항 4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 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3조 2항 1호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3조 2항 2호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 할 수 없게 된 경우	33조 2항 3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3조 2항 4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3조 2항 5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3조 2항 6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3조 2항 7호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3조 2항 8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3조 2항 9호

만일 귀하의 사정에 의해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1개월 전에 당사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당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계약서 제41조)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와의 서면에 의한 요청 및 서면 합의를 통해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만 변경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당사의 승인 후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양도 60일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면담 후 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본사 (02-569-8820)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양수가 맹비 ·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없으며,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대리 행사시킬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 및 승계의사를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의 사후통지 및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 일로부터 3개월 이 내에 상속사실 및 승계의사를 당사에 통지 → 요건 검토 → 승인통지(통지받 은 후 1개월 이내)	교육비 지급 및 교육수료
업무위탁	불가	-		

대리행사 불가	-		
---------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계약기간 동안에는 가맹본부의 [567해장국집] 영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행위를 할수 없으며, 계약종료 후 1년 동안 동일한 영업지역 내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567해장국집]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해장국을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 청 → 당사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여부통지 → 완료	문의: 관리팀 (02-569-8820)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21:00	주 6일	문의: 본사 (02-569-8820)

- ▶ 영업시간은 가맹점의 특성에 따라 당사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특정일에 점포를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3일 전부터 매장 입 구에 개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일 이상 휴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귀하가 합리적인 사유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휴업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휴업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 나아가 가맹계약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는 귀하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자율	직접 근무	당사로부터 승인받은 자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방문을 통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당사의 정책 및 메뉴 등의 준수 여부, 매장의 청결상태, 매출현황, 자점사입 기타 가맹계약 위반 여부	담당자 매장 방문→관리내역 점검→일지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서명 혹은 통지	월 1회 이상	관리팀	

- ▶ 당사는 필요 시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빈도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공지됩니다.
- ▶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맹점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귀하가 가맹계약서 및 영업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에서 지정하는 자가 상기 사항 점검이나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에 자신의 가맹점에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TE	9± 94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군급 글시	2172
광고 및 판촉	상품광고 및 판촉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 광고	광고 및 판촉비의 50%	광고 및 판촉비의 50%	광고 및 판촉 계획→ 가맹점 통보 →비용입 금→광고 시행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 ▶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시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아(광고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의 50% 이상, 판촉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 광고 및 판촉을할 수 있으며, 귀하는 당사가 위와 같이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전국 규모 혹은 자신이 속한지역규모의 광고 및 판촉활동에 필수적으로 참여하기로 합니다. 다만 판촉의 경우에는 찬성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광고와 판촉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가맹점부담액 총금액을 가맹점 매장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지역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적립포인트제도 기타 판촉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참여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광고 등의 내용 및 광고물에 대하여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567해장국집]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의 제조법 및 경영노하우와 공급처 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

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 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 귀하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제34조[계약의 종료 와 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면 그 의무 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 30만원의 지체배상 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제35조(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 제34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각 항을 위반 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4,000만원을, 계약을 중도에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와 사업자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각 2,000만원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귀하는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당사가 지정한 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거나, 자신이 임의로 원·부자재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당사나 당사의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매출감소 등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제공	D-46~45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도면협의 시공	D-28(1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7~25(3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9~5(4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 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줄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O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 정되는 경우 이위생이나 안전 의 결함으로 인 하여 가맹사업 의 통일성을 유 지하기 어렵거 나 정상적인 영 업에 현저한 지 장을 주는 경우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 내건축공사에 소 요되는 일체의 비 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 게 가맹점사업자 가 추가 공사를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O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o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 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 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 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부담액을 지급	O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 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 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 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 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 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없음 : 당사에서는 공동광고비에 의하여 진행하는 광고 이외에 별도로 판촉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 해당없음 : 당사에서는 보수교육 이외에 별도로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없음 : 당사는 [567해장국집] 가맹점사업자에게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없음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567해장국집]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음료 및 음식 가공 및 조리, POS 사용, 접객교육, 재고관리, 기기사용 및 관리, 상품보관 등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수시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신제품 런칭 등 필요시 당사가 기한을 정하여 통지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567해장국집]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4일(32시간)	3,300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교육기간은 당사가 교육내용을 감안하여 지정	실비	교육사항 발생 시 필수적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귀하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원하여 다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비를 추가로부담하여야 하며, 숙박비·교통비 등 제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당사에 교육 및 훈련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신규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공급중단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불 참에 대한 당사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2			
3			

▶ 당사의 567해장국집은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2-569-8820)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 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 원•부재료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 재무제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